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운영 민간위탁(재위탁) 동의안

의안 번호	60

제 출 일 : 2026. 10. 21.
제 출 자 : 남양주시장

1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

○ 추진근거

- 「아동복지법」 제44조의2(다함께돌봄센터)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(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기준 등)
-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, 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
- 「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, 제6조(의회동의 및 보고), 제7조(수탁기관의 선정기준), 제19조(재위탁·재계약)

○ 제안이유

-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돌봄서비스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시의회 사전동의를 받는 사항임
- 「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및 제19조(재위탁·재계약)에 따라 시의회 동의안 제출

2. 위탁사무 내용

○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

- 기본돌봄, 숙제지도, 문화·예술·스포츠 등 프로그램, 등·하원 지원 등

3. 위탁시설 개요

시설명	구분	위 치	면적(㎡)	정원	現 수탁기관
다함께돌봄센터 7호점	**재위탁**	별내3로 247 (별사랑마을2-10단지)	197.29	32	별나라꿈길 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(대표 한동윤)

4. 민간위탁 기간

시설명	설치일	위탁기간	
		기존	재위탁 시
다함께돌봄센터 7호점	2022.03.01.	2022.03.01. ~ 2027.02.28.(5년)	2027.03.01. ~ 2032.02.29.(5년)

5. 수탁기관 선정방식

○ 선정 방식 : 공개모집 후 심사표에 의한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사

○ 추진 절차

성과평가 계획 수립 및 평가	→	수탁자 모집 공고 및 접수	→	수탁자 선정심의 위원회 심의	→	위·수탁 협약체결
2026. 11월 중		2026. 12월 중		2027. 1월 중		2027. 2월 중

6.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

○ 위탁경비 : 약 155,762천원 (1개소/년)

산출근거		합계(천원)	비고
계		155,762	
인건비	·(기본급) 센터장 : 3,342천원 × 12개월 × 1인 ·(기본급) 돌봄교사(전일제) : 3,102천원 × 12개월 × 1인 ·(기본급) 돌봄교사(시간제) : 1,551천원 × 12개월 × 1인 ·(기본급) 돌봄인력(시간제) : 1,551천원 × 12개월 × 1인 ·(호봉제) 개인별 호봉 적용에 따른 기준인건비 초과분 ·(명절수당) 개인별 호봉에 따른 기본급 × 60% × 2회 ※ 월급여,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, 퇴직적립금 포함	약 127,452	기본인건비 + 추가인건비 (호봉적용) + 명절수당
운영비	·(1,530천원 × 12개월) + (400천원 × 2개월) ※ 공공요금, 제세공과금, 수용비, 수수료, 여비 등	19,160	냉난방비 포함
돌봄 프로그램비	·200천원 × 12개월	2,400	
급식비	·4,500원 × 25명(정원의 80%) × 60일(방학일수) ※ (지원기준) 중식 1식 단가 9,000원의 50% 보조	6,750	*방학일수(안) 겨울방학 : 40일 여름방학 : 20일

7.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
구 분	검 토 의 견
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	○ 돌봄종사자 채용, 돌봄 프로그램 구성, 학부모 관리 및 돌봄센터 시설 관리 등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전반 업무를 위탁 운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강화 ○ 돌봄의 질적 향상을 위해 초등아동돌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돌봄전문가에게 위탁 운영 필요
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	○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단발성이 아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운영 가능
경제적 효율성	○ 돌봄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으로 콘텐츠 활용 및 관리인력 측면에서 경제적 효율성 제고 ○ 외부강사 및 외부자원 활용을 통해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 구성으로 사교육비 절감
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	○ 오랜기간 축적된 경험 및 전문성을 통해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원활한 돌봄프로그램 운영·관리 가능
성과 측정의 용이성	○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정기평가 대상 시설 ○ 성과지표의 객관화 및 정당화로 자체평가 용이
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	○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(지도·감독) 및 제34조의4(시설의 안전점검),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(지도·감독)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·감독 및 점검을 통하여 다함께돌봄센터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
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	○ 민간 위탁을 통해 변화하는 돌봄 수요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프로그램 기획 및 활동의 유연성을 높여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
종 합 의 견	○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는 지역사회 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맞벌이 가정의 안정과 행복을 지원 ○ 전문 자격을 갖춘 돌봄 종사자를 채용하여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양질의 돌봄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가 가능 ○ 지역사회 내 자원을 활용하고 온마을이 함께 돌보는 효율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민간위탁 운영으로 지속 추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

8.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

○ 성과평가

- 근거 :「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21조(성과평가)
- 대상 :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7호점
- 아동권리보장원 평가 결과 점수 비공개로 11월 중 부서 자체평가 예정

9. 기대효과

○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공백 해소

○ 지자체에서 직접 설치한 시설을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함으로써 공공성 강화 및 아동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

10. 향후계획

○ 2026. 11. :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성과평가 계획 수립 및 평가

○ 2026. 12. : 수탁법인 공개모집 및 서류 접수

○ 2027. 1. :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 및 수탁기관 선정

○ 2027. 2. :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인수인계 및 위·수탁협약 체결

소관 과		여성아동과
입안자 (제출자)	과장 직위・성명	통합돌봄과장 배 진 위
	팀장 직위・성명	돌봄시설팀장 정 연 희
	담 당 자 성명・전화	박 정 은 (031-590-8484)